

**Q...일반 아파트의 주방 배기 덕트 부위도 자동방화댐퍼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 103도 중력식 댐퍼를 설치하는 것도 가능한 지와, 점검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건물 내에 쾌적한 환경의 제공을 위한 냉난방 설비, 화장실, 주방의 배기 등 덕트 설비가 설치되는데, 이러한 공기의 이동 덕트는 화재 시 연기와 화염을 전파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자동방화댐퍼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아파트의 방화구획선상을 관통하는 덕트에는 「건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3항에 적합한 방화댐퍼를 설치하고 KS 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5.1.4(방화댐퍼)에 “검사구·점검구는 적절한 위치일 것”에 만족하면 됩니다.

**Q...비상용 승강장(홀)은 갑종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한다고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물(거실) 구조상 방화셔터로 구획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비상용 승강장으로서 소방법상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적·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는 방화구획대상으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 및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 제3조제2항에 “일체형 셔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으니, 해당 건물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소방설비할인율표에 따른 할인이 되려면 꼭 FILK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하는지, 만약 할인이 된다고 가정하면 누적으로 최대 몇 %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소화설비규정」에 “초기소화기는 FILK 인증제품인 경우에 한하여 소화기할인을 적용한다.” 또한 「화재보험요율서」에 “소화설비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소화설비의 주요구성품은 방재시험연구원의 인증품(FILK인증품)이어야 한다. 다만, 소화기를 제외하고 주요 구성품이 국가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갖는 경우는 할인율의 70%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소화설비규정에 맞게 설치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소화설비할인율은 최대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코너는 방화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한 답변은 관련 법률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아니며, 견해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소관부처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아파트 단지 내 주민 편의시설로 각종 운동시설 등이 있고, 이 시설들이 아파트 상가가 아닌 관리동에 위치하여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화재보험 적용물건에서 아파트의 경우는 단지 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용 운동시설은 주택화재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에 따른 보험금액에 위자료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위자료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하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에서 신체관련 보험금액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보험금액) 및 시행규칙 제2조(실손해액)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산출하며, 이 규정에 위자료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보험금액 산정 시 위자료는 감안하지 않습니다.

**Q**...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보면 제20조 외기취입구 항목에서 "취입구가 배기구의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옥상에 제연팬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층이 3개 층 이상(9m) 차이가 나서 수직거리는 1m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킵니다. 이렇듯 수직거리를 충분히 충족시키는 경우에도 수평거리를 꼭 충족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A**...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20조 2호 나에 의거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하도록 한 것은 화재 시 건물외벽을 따라 상승하는 오염된 공기가 취입구를 통해 전실로 급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이 필요합니다.